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67
----------	-------

발의연월일 : 2024. 1. 8.

발 의 자 : 안민석·도종환·한준호
金炳旭·민병덕·서동용
김수홍·서병수·유기홍
김홍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학교복합시설은 가장 중요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활동 등을 한 곳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소통과 배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과 대학을 추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신설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제1항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를 “감독기관의 장(「유아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복합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정책 관련 자료개발·정책분석
2.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학교복합시설 관련 자료조사·연구
4. 학교복합시설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5. 학교복합시설 관련 연수·교육·홍보자료의 개발·보급
6. 학교복합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
8.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지원센터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교복합시설의 전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수익에 관한 수입·지출 및 회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의 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립준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 당시의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3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과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권리·의무는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가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원업무를 위한 직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기관에서 퇴직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에 신규 임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u><신 설></u>	<u>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u>
<u><신 설></u>	<u>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u>
<u><신 설></u>	<u>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u>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2.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생략)

② ~ ⑥ (생략)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 ③ (생략)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생략)

-----.

1. -----
-----감독기관의 장(「유아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정책 관련 자료개발·정책분석
2.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학교복합시설 관련 자료조사·연구
4. 학교복합시설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5. 학교복합시설 관련 연수·교육·홍보자료의 개발·보급
6. 학교복합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
8.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

<신 설>

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지원센터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신 설>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교복합시설의 전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
는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
용허가, 사용·수익에 관한 수
입·지출 및 회계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